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. 4. 25 선고 2022가단719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리로

담당변호사 박종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

담당변호사 김동률

변 론 종 결 2024. 4. 4.

판 결 선 고 2024. 4. 25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2. 3. 3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76,500,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
2022. 4. 1. 접수 제176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76,500,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(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3. 3. 31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3. 5. 10.경 해지되었고, 원상회복으로서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. 4. 1. 접수 제176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3. 5. 30.경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이상과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,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태윤

별지